

『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25일

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기획예산담당관 박 영 일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대상(안 제1조~제3조)
- 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4조~제7조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(안 제8조~제9조)
- 회의의 운영 및 공개(안 제11조~제12조)
- 회의록 작성 및 공개(안 제13조)
- 위원회 관리 및 정비(안 제15조)
-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(붙임)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속

○ 본 조례안은

- 개별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'21. 8월 말 기준 156개에 달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된 기준 마련으로,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위원 중복위촉 금지, 연임 금지, 회의 공개, 회의록 작성 의무화,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또는 폐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 제한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